

창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가단103976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손홍락

피 고 기◇◇◇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변 론 종 결 2019. 5. 24.

판 결 선 고 2019.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8.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000,000원을 일반자금대출로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비율을 대출금액의 90%로, 보증기간은 대출만료일(여신 기간 만료일)인 2014. 2. 6.까지로 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대출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간이 연장되면서, 대출잔액과 보증비율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순번	대출(연장)일자	대출(연장), 보증기간	일부변제금액	대출잔액	보증비율	비고
최초	2013. 2. 8.	2014. 2. 6.까지	-	200,000,000원	90%	
1	2014. 2. 6.	2015. 2. 6.까지	20,000,000원	180,000,000원	90%	
2	2015. 2. 6.	2016. 2. 6.까지	-	180,000,000원	90%	
3	2016. 2. 11.	2016. 8. 5.까지	18,000,000원	162,000,000원	90%	보증기간단축
4	2016. 8. 5.	2017. 2. 3.까지	-	162,000,000원	90%	
5	2017. 2. 3.	2018. 2. 2.까지	-	162,000,000원	85%	
6	2018. 2. 2.	2019. 2. 1.까지	1,000,000원	161,000,000원	85%	

다. 원고는 세 번째 대출 연장 당시인 2016. 2. 11. 대출기한을 2016. 8. 5.까지로 정하면서도 피고에게는 보증기한이 2017. 2. 3.까지로 변경되는 것으로 통지하였고, 2016. 8. 5.부터 네 번째로

대출연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별도로 통지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이후 소외 회사는 2018. 9. 22.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11. 6. 소외 회사의 이자연체를 사유로 피고에게 보증사고를 통지하고 2018. 11. 9.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마.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보증약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증약관

제5조 보증책임의 부담

⑤ 보증부대출의 기한이 전자보증서의 보증기한보다 단기인 때에는 기보(피고)가 따로 보증조건변경 통지를 아니하더라도 보증기한은 대출기한과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단축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보증조건의 변경

- ① 채권자(대출취급기관, 원고)는 기보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부 대출기한의 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기보는 제1항의 통지에 부합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채권자는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기보의 보증조건 변경통지에 의하여 기존 대출을 소멸시키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신규대출형식으로 보증부대출의 기한을 연장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7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 ②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약정이자율을 기보에게 지체없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실행
 2. 보증조건의 변경에 따른 보증부 대출기한의 연장

[인정근거] 다통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세 번째 대출기한 연장시 대출기간을 2016. 8. 5.로 단축하였고, 보증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한도 2016. 8. 5.로 단축되었으며, 이후 원고가 다시 대출기한을 2017. 2.

3.까지로 연장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바 없으므로 네 번째 이후의 대출기한 연장은 보증약관 위반으로 효력이 없어 결국 이 사건 보증계약은 2018. 8. 5. 보증기한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보증기한 만료 이후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조건 변경 통지에 부합하게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만약 채권자가 보증기한보다 대출기한을 단기로 설정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보증기한도 대출기한과 동일하게 단축되는바, 원고가 세 번째 대출기한 연장시 피고가 통지한 보증기한인 2017. 2. 3.과 달리 대출기한을 2016. 8. 5.까지로 단축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한도 동일하게 단축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네 번째 대출기간 연장에 대하여 피고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그 이후의 대출연장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대출기한을 축소하여 대출을 실행시킨 것은 보증조건의 변경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통지의무가 없고, 애초 피고가 2016. 2. 5.부터 2017. 2. 3.까지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보증조건 변경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기간 내인 2016. 8. 5.까지 대출을 실행하고, 이어서 나머지 기간에 다시 대출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보증약관에 의할 때 대출기한이 축소되는 경우도 보증조건 변경으로 충분히 해석되므로, 대출기한 축소의 경우 보증조건의 변경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애초 피고가 변경한 보증기한 내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약관상 대출기한이 단축되면 보증기한도 동일하게 단축되므로, 대출기한 단축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시

보증조건 변경통지를 받은 후 연장을 하여야 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보증약관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네 번째 대출기한 이후 보증기한이 연장됨으로써 새로운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보증약관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신의칙위반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의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받기 전까지 원고가 대출기한을 단축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네 번째 이후 보증기한이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 거절은 약관에 근거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여야만 이행의 거절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약관규정을 둔 취지는 보증기관인 피고가 채무자의 신용변화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적용을 위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보증약관의 내용 및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량 금융거래질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약관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수정